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

한국도로공사 2022년 하반기 신입(인턴)사원 공개채용
[8급 공채-고졸(일반전형), 고졸(보훈전형), 장애인전형]

1. 선발분야 및 인원

구 분		계	행 정 직	기 술 직			
			행 정	토 목	설 비	전 산	전 자
고졸공채	일반전형	12	3	6	1	1	1
	보훈전형	2	2				
장애인전형		1	1				

※ 분야별 수행 직무는 NCS 직무기술서 참조

2. 채용직급 : 인턴사원(채용형)

※ 인턴 신분으로 교육 및 현장실습기간(3개월 내외, 단 인력수급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)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(8급) 임용

3. 지원자격

구 분	내 용
공 통	□ 연령 제한 없음 (단, 공사 정년에 도달하는 자 제외) □ 성별, 어학성적 제한 없음 □ 병역사항 제한없음 (단,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) □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[붙임 1] □ 인턴채용일('22년 12월말 예정)로 부터 근무 가능자(사업장 전국 소재) □ 선발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[붙임 2]
고졸공채	□ 채용공고 마감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※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3년 2월 졸업예정인 자 ※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전문대 이상 중퇴자, 재학, 휴학 중인 자는 지원 가능. 단, 전문대 이상 졸업(예정)자는 지원불가(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재학, 휴학 또는 졸업유예자 지원불가) **※ 전문대 이상의 졸업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될 수 있음** **※ 증빙서류 (추후 제출)** – 최종학력 증명서 : 졸업(예정)증명서, 재학, 휴학, 중퇴 증명서 등 – 한국장학재단 대출·장학금 신청증명서 등 □ [보훈전형]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[붙임3]
장애인전형	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**※ 증빙서류 (추후 제출)** – 장애인증명서

※ 자격증, 부가가점 대상 등 모든 자격요건, 평가 및 우대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('22. 10. 27) 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
4. 전형별 주요내용

전형단계	내 용	일정(예정)
원서접수	□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(www.ex.co.kr) - 역량기술서, 선발 분야별 필수자격증[붙임2], 부가가점[붙임3],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이전지역인재 등 기입	10.13(목) ~ 10.27(목) 15:00 (기간 내 24시간 입력 가능)
서류전형	□ 선발인원 : 지원자격 충족 및 역량기술서 적합시 전원 선발 □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필기전형 대상자를 우선 결정함 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: 11. 8(화) ~ 11.11(금) 15:00 ① 필기전형 대상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생년월일, 성별 등 정보입력 ② 해당자는 우대사항 증빙서류 스캔파일 등록 [붙임 3, 4] ※ 본인인증 기간 내 입력한 정보를 통해 필수자격증, 부가가점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, 본인인증을 미실시 하는 경우 필기전형 응시 불가 ※ 진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인정기준 [붙임 3, 4] ①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(등록)한 서류만 인정 ② 채용공고일('22.10.13 포함)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□ 채용절차 진행 중 허위·오기재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으로는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탈락처리 등 불이익 처리하므로 입사지원 및 본인인증시 자격증번호, 생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입 ※ 미기재·오기재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응시여부와 무관하게 미응시자로 간주하며 탈락 처리함 □ 입사지원서 상 입력된 각종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의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※ 제출한 서류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□ NCS 기반 역량기술서 작성불량자(단순 기호입력 등 불성실 입력, 타기관 지원서 입력, 표절, 블라인드 위반 등)는 서류전형 탈락 처리	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: 11.8(화)예정
필기전형	□ 시험장소 : 서울, 대구, 광주(입사지원 시 선택) ※ 단, 응시희망지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우 일부 지원자는 희망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정될 수 있음 ※ 특정지역 편중시 시험장소 배정순서 : ①장애인 ②입사지원서 최종제출이 빠른 순 ※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3개 지역 외 인근장소에서 필기전형 실시 가능 ※ 세부 시험장소는 필기전형 공고(11.22 예정) 시 확정(홈페이지상 개별 확인) □ 평가항목 [붙임 5] : 직업기초능력평가(100%) □ 선발방법 :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, 부가가점 [붙임 3] 합산 고득점자 순 ※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40% 미만 득점(과락)시 불합격 처리 ※ 필기전형 불합격자에 한해 합격 커트라인 및 본인 점수 공개 예정 □ 선발인원 ※ 동점자 전원선발 – 선발인원이 6명 이상인 분야 :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– 선발인원이 5명 이하인 분야 :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	필기시험일 : 11.26(토)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12월초 예정

전형단계	내 용	일정(예정)
면접전형 및 인성검사	□ 면접전형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종합평가(발표 등) □ 인성검사(조직적합도 검사) : 면접당일 실시 및 부적격자 탈락	별도안내
최종합격자 발표	□ 필기전형 점수, 면접전형 점수, 법정가점 합산 고득점자 순	별도안내

5. 채용목표제

구 분	고졸공채
이전지역인재	□ 대 상 최종학력기준 대구·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. 단, 대구·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제외 ※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·제출할 수 있는 자 (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학교 측에 반드시 확인 후 입력) □ 목표비율 각 전형별(필기·면접) 선발예정인원의 30% □ 방 법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(필기·면접) 선발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'30%'에 미달하는 경우(단, 최종 선발 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)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'-3점'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(단, 과락자는 제외)
양성평등	□ 목표비율 각 전형(필기·면접)별 선발 예정인원의 30% □ 방 법 특정 성별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(필기·면접) 선발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'30%'에 미달하는 경우(단,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)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'-3점'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(단, 과락자는 제외)

6. 합격자 근무조건

o 보수수준 : 210만원 수준/월 (단, 8급 임용 시에는 해당 보수기준 적용)

o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

o 복지후생 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 등

7. 근무장소 : 한국도로공사 전 사업장(본사 및 전국소재 기관)

8.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

□ 상기 일정은 코로나 19 상황 및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전형별, 선발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
□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,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관련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, 지원서 입력착오(미기재, 오기재, 공유로 인한 표절 등)로 인한 불이익(불합격 등)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자격증, 부가가점 대상자 등 모든 자격요건, 평가 및 우대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('22.10.27) 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
※ 진위확인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('22.10.13 포함)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

□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본인인증 정보를 통해 필수자격증 등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탈락처리 되니 정보기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지원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접수마감시간 연장 없음)

※ 시스템상 제출버튼 클릭 시 저장 및 자동제출 되며, 별도 최종제출 버튼 없음(접수기간 내 수정 가능)

□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류 위·변조,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채용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장애인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우리 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,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(출신학교, 가족관계 등)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이를 위반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노출시 부적격(탈락)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
□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결원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, 결원 발생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됩니다.

□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청탁을 금지합니다.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, 합격 취소, 재응시 자격 제한, 관련기관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전형별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(과락, 인성검사 불합격 등)하는 경우 합격배수,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□ 최종 합격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기간 및 방법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.

□ 코로나-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통한 안정적인 채용절차 운영을 위해 면접의 경우 필요시에는 온라인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.

□ 전형별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전형단계별 합격자 여부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· **(접수방법)** 최종합격자 발표 안내시 공지(예정)
· **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**
-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응시자, 시험출제자,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,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
-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

※ 평가기준,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

9. 문 의 처 :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☎ 1588-2504

붙　임 : 1. 채용결격사유(인사규정 제8조) 1부
2. 필수 자격증 기준 1부
3. 부가가점 기준 1부
4. 부가점수 및 우대사항 증빙 방법 및 유의사항 1부
5. 필기시험 출제 범위 1부
6.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1부.　끝.

붙 임 1

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

제8조 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9.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
10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붙 임 2

필수 자격증 기준

구 분	대상자격
행 정	전산회계운용사1급, 전산회계운용사2급, 전산회계운용사3급, (부기 1급 ~ 3급 포함), 전산회계 1급, 전산회계 2급
토 목	건설재료시험기능사,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, 환경기능사, 측량기능사, 콘크리트기능사
설 비	기계가공조립기능사(기계조립기능사),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, 생산자동화기능사(메카트로닉스기능사), 자동차정비기능사 (자동차검사기능사), 건설기계정비기능사(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), 공조냉동기계기능사, 기계정비기능사, 에너지관리기능사(보일러기능사),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, 온수온돌기능사, 배관기능사, 환경기능사
전산/전자	무선설비기능사, 방송통신기능사, 전파전자통신기능사,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통신선로기능사, 통신기기기능사, 전자계산기기능사, 전자기기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

※ 기술직(토목・설비・전산・전자)의 경우 해당분야 기사(산업기사) 포함

붙 임 3

부가가점 기준

□ 법정 가점

구 분		부가점수	비 고
취업지원 대상자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	각 전형별 만점의 5% / 10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	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		
	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		
	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		
	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		
	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		

□ 선택 가점

구 분		부가점수	비 고
재직직원	2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 (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환산하여 적용)	필기시험 만점의 5%	o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o 가장 유리한 선택가점 하나만 적용함
공사 체험형 청년인턴	한국도로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최우수(우수) 수료자(계약 만료후 2년이내, 채용시 소멸)	필기시험 만점의 2%	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	필기시험 만점의 5%	

□ 자격증 가점

구 분		부가점수
공 통	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	필기시험 만점의 3%
	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전자계산기(제어)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한국사능력검정 1·2급	〃 2%
	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(구1급), 컴퓨터활용능력 2급	〃 1.5%
	워드프로세서 2급, 컴퓨터활용능력 3급	〃 1%
행 정	변호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공인노무사, 감정평가사	〃 10%
기 술	해당 직종 기술사(서류전형 기준 자격증)	〃 10%
	해당 직종 기사(서류전형 기준 자격증)	〃 3%

※ 가점계산 방법 : 법정 가점 + 선택 가점(재직직원, 체험형인턴, 장애인 중 택 1) + 자격증 가점
※ 법정가점과 선택가점은 합산하여 10%(10점) 초과불가
※ 자격증 가점은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

붙 임 4

부가점수 증빙방법 및 유의사항

□ 부가가점 증빙방법

구 분	대 상	우대사항	증빙 방법
법정 가점	취업지원 대상자	각 전형별 만점의 5%/10%	※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① 입사지원 시 보훈번호, 가점비율 등 입력 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- 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
선택 가점	재직직원	필기시험 만점의 5%	①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선택 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- 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
	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 (최우수포함)	필기시험 만점의 2%	
	장애인	필기시험 만점의 5%	※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①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선택 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- 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 - 장애인증명서 스캔본 첨부
자격증 가점	공통	필기시험 만점의 1%~3%	① 입사지원 시 자격증명, 자격번호 등 입력 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- 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
	행정	필기시험 만점의 10%	
	기술	필기시험 만점의 3%/10%	

※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각종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

□ 유의사항

o 취업지원대상자

- 입사지원 내용 및 본인인증 기간에 기재한 정보로 진위여부를 우선 확인 하므로 보훈번호·가점비율 등의 정보입력에 유의

o 장애인

- 입사지원 내용 및 본인인증 기간에 기재한 정보와 본인인증 기간에 시스템에 첨부한 해당 증명서(확인서)로 진위여부 확인
- 해당 증명서(확인서)는 반드시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며, 공고일(2022.10.13. 포함)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므로 유의

o 자격증 등

- 입사지원 및 본인인증 기간에 작성한 정보로 진위여부를 우선 확인 하므로 자격번호, 자격증명, 생년월일, 성별정보 등의 정보입력에 유의

☐ 제출서류 출력방법

구 분	출력경로(정부24 : www.gov.kr)
장애인 증명서	장애인증명서발급 신청방법: 인터넷, 방문, 우편 / 처리기간: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 수수료: 수수료 없음 / 신청서: 장애인증명서(CERTIFICATE OF PERSON WITH DISABILITY) 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9호) ※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.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: 없음 (하단참조) / 신청자격: 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

☐ **정부24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** : 문서 상단의 문서 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확인번호(16자리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, 확인 불가 시 미인정 (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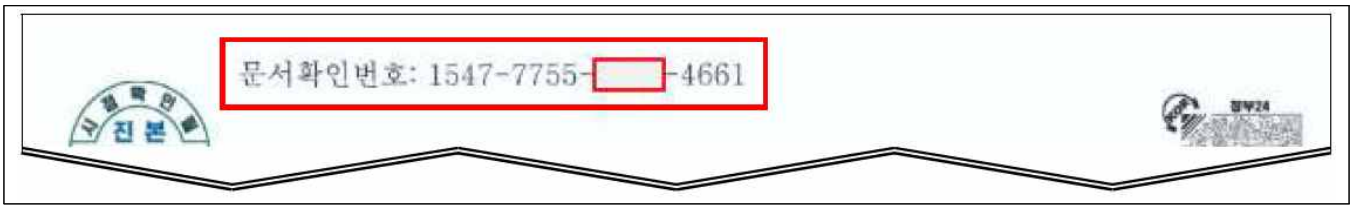

붙 임 5

필기시험 출제 범위

□ 직업기초능력평가

구 분	출 제 과 목
행정직군	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원관리능력
기술직군	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기술능력

붙 임 6

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(발췌)

가.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

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"이전지역 학교"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.

나. 이전지역 학교

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
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
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
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
*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
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
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
㉮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
㉯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
㉰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
㉱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
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다. 이전 지역인재

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

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
㉮ 이전지역에 위치한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
㉯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
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㉮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
㉯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
㉰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
㉱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
㉲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㉮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㉯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 시 >

<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>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 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 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
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
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
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

※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[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] 등 관계법령 참고